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동물원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신설 등〉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67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물원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신설 등	3
※ 참고자료	10
1. 동물원 관리 현황 제도 현황	10
2. 전국 동물원 현황	11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점검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 명령을 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

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물원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신설 등

개정안은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며, ② 허가권자는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경과 이후에는 허가가 간주되도록 하며,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허가를 받은 경우를 허가 취소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0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8조의2(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u>

현행	개정안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갯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갯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갯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다음 날에 갯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갯신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허가</u> 를 받은 경우	1. ----- ----- <u>허가·갱신허가</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탈출사고, 동물학대 및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등으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¹⁾,

최근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동물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원·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²⁾ 주요 내용]

- (등록제 → 허가제) 전문인력 기준 강화, 질병·안전관리계획 및 휴·폐원시 보유동물관리계획 제시 등 구체적 허가요건 명시
 - (검사관/거점동물원 제도 도입) 전문가 그룹인 검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범위*, 권역별 거점동물원** 지정
- * 동물원 현장조사·평가 등 지원, ** 권역내 교육·홍보·자문 및 질병·안전관리 지원
- (휴폐원) 휴원신고 요건 강화(연속 6개월 이상 미개방 사유 발생→연속 3개월 이상 미개방 사유 발생) 등

1) "끓기고, 변 방치"...코로나 여파 '휴장 동물원' 동물학대 논란(2021.02.07., 중앙일보)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9086호, 시행 2023. 12. 14.)

○ (금지행위 및 질병관리) 올라타기 등 금지행위 추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의무화 ○ (의무교육 등) 동물원 근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기록물 보유기간(3년→20년) 확대 등

※ 출처: 환경부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질병관리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³⁾,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 가능성 및 노후화된 시설의 방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②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며, ③ 갱신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을 마련하려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4.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이하 “휴·폐원”이라 한다)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5.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것으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 복지 및 관람객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원·수족관 허가·운영 현황, 보유동물 복지 실태 등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서류·시설·장비 검사를 통해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허가 취소, 시설 개선 등 조치 명령이 가능⁵⁾하므로, 개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
3.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공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

정안 도입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가 영구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원·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참고로, 다수의 현행법령에서는 허가기준의 정기적 점검 등을 위하여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음⁶⁾.

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동물원·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검사: 허가 후 5년마다 1회
2. 수시검사: 허가권자가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장비 등의 실태 및 보유동물 관리 실태, 근무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3.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
5. 교육대상자의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6)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낙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낙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 회 10년 이내에서 2 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낙시터업의 경우에는 그 낙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해당 구역의 면허나 허가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541

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1. 동물원 관리 현황 제도 현황

① 동물원·수족관 설립기준 강화

- **(허가제 전환)**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허가권자는 전문 검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 검토

- 서식환경·전문인력 등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수족관 설립이 가능하며, 기존 동물원은 **5년내** 허가를 득하도록 유예

* 동물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시 동물관리계획 등

<동물원 허가기준 개정안>

구분	기 준(등록기준)	개 정(허가기준)
서식환경 기준	< 신 설 >	• 주요 동물 사육기준 규정 * 세부기준은 허가업무지침에서 구체화
전문인력 기준	• 사육사 : 1~3명(40종 미만 1명, 40종~70종 2명, 70종 이상 3명) • 수의사 : 1명(축탁수의사 허용)	• 사육사 : 2~6명(70종 미만 2명(위험 동물 보유시 3명), 70종 이상 6명) • 수의사 : 1~2명(위험동물 보유시 2명)
질병·안전 등 관리 계획	• 자체 수립 후 이행	• 허가 시 계획의 적절성 평가

- **(전문검사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자문

* 수의사 취득후 동물원 5년이상 근무, 동물원에서 7년이상 종사, 관련 업무 10년이상 종사

② 동물원 현황조사 및 제재 강화

- **(실태조사 및 시설검사)** 환경부·해수부가 5년마다 시설 운영현황, 동물복지 등에 대해 실태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 허가권자의 정기검사(매 5년) 및 수시검사(필요시) 실시 규정 마련

- **(처벌기준 강화)**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조치명령 기준 구체화, 벌칙 및 과태료 강화 등 제도 이행력 확보

2. 전국 동물원 현황('23.12월말 기준)

□ 동물원 등록 현황(총 127개소)

- (운영주체) 공영동물원 : 27개소, 민간동물원 : 100개소
- (시설형태) 실내동물원 : 60개소(공영 5, 민간 55)
- (규모*) 대형동물원 : 15개소, 중형동물원 : 36개소, 소형동물원 : 76개소
- * 동물원 규모 : 대(10,000m² 이상), 중(1,000~10,000m²), 소(1,000m² 미만)

<운영 주체별·규모별 동물원 현황>

합계	공영 동물원	민간동물원(100)				규모별*			비 고
		야외방사장 유무		체험 여부					
		야외공간 확보	실내동물원	전시형	체험형	대	중	소	
127	27	45	55	44	56	15	36	76	* 실내동물원 수 : 12('16)→60('23)

* 공영동물원 27개소 중 야외공간 확보 22개소, 실내동물원 5개소

<지역별 동물원 현황>

지자체명	합계	공영	민영
합계	127	27	100
서울특별시	5	1	4
부산광역시	6	1	5
대구광역시	4	1	3
인천광역시	7	1	6
광주광역시	3	1	2
대전광역시	4	1	3
울산광역시	4	1	3
강원특별자치도	10	1	9
경기도	29	1	28
충청북도	4	1	3
충청남도	6	2	4
전라북도	4	3	1
전라남도	11	4	7
경상북도	9	2	7
경상남도	8	4	4
제주특별자치도	9	1	8
세종특별자치시	4	1	3